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4호,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

○ 2023년 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*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
중소기업 금융지원	304,216	304,216	-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2,800	102,800	-
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79	279	-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137	1,137	-
재무활동	68,427	122,778	54,351 (79.4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상환	10,000	10,000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원리금 예수금 이차상환	2,640	2,640	-
예치금	55,787	110,138	54,351
행정운영경비	5	5	-
기금관리비	5	5	-

\*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('22.12월)을 받은 금액임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A-B)	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A-B)	
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	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	
기금 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257,762	257,762	-	사업비	기금 용자금	200,000	200,0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2,770	2,770	-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	102,800	102,800	-
			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79	279	-
예치금 회수	70,767	125,107	54,340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137	1,137	-
기타(일반)회계 전입금	41,349	41,349	-	재무활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10,000	10,000	-
	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차 상환	2,640	2,640	-
예치금	55,787	110,138	54,351					
기타수입	-	11	11	기본경비	5	5	-	

### 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543억 4,000만원)와 기타수입(1,1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 예치(543억 5,1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 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,
 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<sup>2)</sup>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 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9.4%, 543억 5,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6

### 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 합 계	372,648	426,999	54,351	14.5
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	304,216	304,216	-	-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68,427	122,778	54,351	79.4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	12,640	12,640	-	-
여 유 자 금 예 치	55,787	110,138	54,351	97.4
행 정 운 영 경 비	5	5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지출계획,  
②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3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조성)

-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1. 시로부터의 전입금
 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
  3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
  4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